



#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

● 산업자원부 ●

##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-101 호

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05. 12. .  
산업자원부장관

### 1. 제정배경

- 액화석유가스소비자 가격의 40%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, 소형용기를 통한 낙후된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액화석유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소로부터 용기(벌크로리 포함) 배송 및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안전점검

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배송센터를 도입·운영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판매업소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로부터 용기(벌크로리 포함) 배송 및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안전점검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배송센터를 도입함(안 제2조 제1호)

나.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저장능력 제한규정을 삭제하고, 공동저장시설외의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의

저장능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을 250kg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함. 다만, 500kg초과 1톤 이하인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제1항 및 제4항)

다. 사업자의 업무경감 및 용기 상호표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용기의 외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가스공급자 상호 대신 배송센터 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제3항)

**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**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(이하 “배송센터”라 한다)의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실시의 타당성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배송센터”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행위(이하 “배송”이라 한다)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.
2. “시범사업자”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배송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.
3. “배송위탁 사업자”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배송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을 배송센터에 위탁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① 시범사업자 및 시범배송지역은 다음 표와 같다.

시범사업자명	소재지	시범배송지역
서해LPG충전소	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12-38	충청남도 당진군
영동가스충전소	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산42-1	강원도 속초시
영진에너지	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69-3	전라남도 영광군

② 이 고시는 시범사업자, 배송위탁사업자 및 시범배송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배송센터 신고 등)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배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배송센터 상호명 및 액화석유가스의 배송을 위탁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센터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2. 배송위탁 사업자 현황

제5조(시범사업자 지정의 취소) 산업자원부장

관 또는 허가관청은 시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범사업자 지정 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 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받은 때
2.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시범사업자로 지정 받은 때
3.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 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
4. 사업계획서를 현저히 준수하지 아니하 거나 기타 배송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때

제6조(위탁계약 체결) 시범사업자가 액화석 유가스를 소비자에게 배송하고자 할 때에는 배송위탁사업자와 배송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7조(저장능력 등의 적용) ①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는 규칙 별표3제1호다목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시설에 한해 저장능력에 관계없이 자동차에 고정된 탱 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다.

②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시범사업자 에게 액화석유가스의 배송을 위탁한 경 우에는 규칙 별표5 제1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 유가스전용운반자동차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

③시범사업자가 배송하는 용기의 외면에는 규칙 제43조 및 별표17 제2호마목(1)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충 전사업자 및 가스공급자 상호 대신 배송 센터의 상호를 표시할 수 있다.

④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 사용자는 영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장시설외의 소형저장탱크 사용시 설의 저장능력이 500kg를 초과하는 경

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의 저장능력이 500kg초과 1톤이하인 경우에는 가스공 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의 허가 의제) ①시범사업자와 배 송위탁사업자 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허가를 받은 자 는 규칙 별표3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고정된탱크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 중 법 제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 장탱크에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9조(배송 수수료) 배송 수수료는 시범사업 자와 배송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기간)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 배 송센터 관련법령 정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.

제3조(시범사업 개시 및 보고) 시범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시범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, 시범사업 개시 일을 산 업자원부장관 및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험가입) 시범사업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시범 사업에 적합한 보험으로 갱신하여야 한다.

[별지 서식]

<b>액화석유가스배송센터 설치</b>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고서		처리기간
		즉시
신	①상 호	
고	②성명(대표자)	③주민등록번호
인	④사무소소재지	(전화 : )
배	⑤상 호	⑥허가 종류      ⑦허가번호 및 연월일
송	⑧성명(대표자)	
센	⑨소 재 지	(전화 : )
터	⑩배 송 지 역	
<p>산업자원부고시 제2005-      호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센터를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고인 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    ·    도    지    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  귀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장 · 군수 · 구청장</p>		
<p>구비서류</p> <p>1. 신고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사업계획서 1부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배송위탁 사업자 현황 1부</p> <p>2. 변경신고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배송센터 상호명(변경된 경우 한함) 1부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배송위탁 사업자 현황(변경된 경우 한함) 1부.</p>		